

1. 개정이유

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06호, 2021.12.21. 일부개정, 2023.12.2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의5)

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5(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)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도시지표”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.

1.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조례·중장기 계획 등 마련 여부 및 예산·조직·인력 등 확보 현황
2.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
3.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
4.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
5. 그 밖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,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보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5(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)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도시지표”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.</u> <u>1.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조례·중장기 계획 등 마련 여부 및 예산·조직·인력 등 확보 현황</u> <u>2.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</u> <u>3.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</u> <u>4.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</u> <u>5. 그 밖에 건강도시 구현을 위</u>

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
지표를 간행물 발간, 인터넷 홈
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
자치단체에 널리 보급한다.